##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333

발의연월일: 2025. 5. 2.

발 의 자:김용민・박지원・박민규

민형배 • 노종면 • 주철현

송재봉 • 부승찬 • 임미애

김남희 · 임오경 · 박희승

한준호 · 백승아 · 민병덕

서미화 · 김승원 · 장경태

이원택 · 정진욱 · 안태준

위성락 • 박성준 • 문진석

김현정 의원(25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.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.

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, 재판부가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.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됨. 또한, 재판이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, 정

지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음.

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,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06조제6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 기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第306條(公判節次의 停止) ① ~ | 第306條(公判節次의 停止) ① ~ |
| ⑤ (생 략)             | ⑤ (현행과 같음)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| ⑥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부터 임기종료시까지 결정으로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.     |